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미애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4534

발의연월일: 2024. 10. 4.

발 의 자:임미애·임오경·김한규

박민규 · 임호선 · 이광희

문금주 · 최민희 · 황명선

백승아 • 이연희 • 이병진

위성곤 • 황정아 • 김영환

문대림 • 이기헌 • 강준현

의원(18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취업제한 명령을 받은 성범죄자는 유치원, 학교, 아이돌봄 서비스, 가정방문 학습교사 등 아동·청소년과의 대면접촉이 이루어지 는 시설이나 업종에 취업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최근 에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개정(2024.1.16.)을 통해 성범죄자 는 가정에 물품을 배송하는 택배업에도 취업의 제한을 받게 되었음.

하지만, 성범죄자가 가정방문 설치·점검·수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에 종사하게 될 경우, 아동·청소년과의 대면접촉이 좁은 공간에 서 이루어져 성범죄가 발생할 개연성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업종은 아직 성범죄자 취업제한에서 제외되어 있음.

이에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시설이나 물품을 설치 · 점검 · 수리하는

직종을 성범죄자의 취업제한 범위에 포함시킴으로써 아동·청소년대 상 성범죄 발생을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56조제1항제26호 및 제57조제 3항제18호 신설).

법률 제 호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제1항에 제2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6. 가정을 방문하여 시설이나 물품을 설치·점검 또는 수리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모집하거나 채용하는 사업장(이하 "가정방문 설치·점검·수리 서비스 사업장"이라 한다). 이 경우 직접가정을 방문하여 설치·점검·수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 한정한다.

제57조제3항에 제1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8. 제56조제1항제26호의 가정방문 설치ㆍ점검ㆍ수리 서비스 사업장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등에 관한 적용례 등) 제56조제1항제26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받고 이 법 시행 이후 취업이 제한되거나 이 법 시행 당시 취업제한 기간 중에 있는 사람에게도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	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		
에의 취업제한 등) ① 법원은	에의 취업제한 등) ①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이하"성범죄"			
라 한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			
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약			
식명령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			
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			
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일정			
기간(이하 "취업제한 기간"이라			
한다) 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ㆍ기관 또는 사업장(이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이			
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등에 취업 또			
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이하 "취업			
제한 명령"이라 한다)을 성범			
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			
(약식명령의 경우에는 고지)하			

여야 한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 25. (생 략) <신 설>

② ~ ⑨ (생 략)

- 제57조(성범죄의 경력자 점검· 저 확인) ①·② (생 략)
 -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 수·구청장은 성범죄로 취업제 한 명령을 선고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아동·청소년 관련기 관등을 운영하거나 아동·청소

·.
1. ~ 25. (현행과 같음)
26. 가정을 방문하여 시설이나
물품을 설치・점검 또는 수
리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모집하거나 채용하는
사업장(이하 "가정방문 설치
·점검·수리 서비스 사업
장"이라 한다). 이 경우 직접
<u>가정을 방문하여 설치·점검</u>
• 수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 한
<u>정한다.</u>
② ~ ⑨ (현행과 같음)
ll57조(성범죄의 경력자 점검·
확인)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년 관련기관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지를 직접 또는 관계 기관 조회등의 방법으로 연 1회 이상 점검·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에 해당하는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17. (생 략) <u><신 설></u>

④ ~ ⑥ (생 략)

1. ~ 17. (현행과 같음)
18. 제56조제1항제26호의 가정
<u>방문 설치·점검·수리 서비</u>
스 사업장
④ ~ ⑥ (현행과 같음)